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1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실용신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0000장관)
제출연월일	2015. . .

1. 의결주문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포함되는 청구범위를 적는 명세서의 보정기한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상 조문이 이동되었으므로,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1호사목 중 “법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”를 “법 제8조의2제2항 단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)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“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.</p> <p>1.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. ~ 바. (생략)</p> <p>사. <u>법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</u> 아. ~ 머. (생략)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의2(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-----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<u>법 제8조의2제2항 단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아. ~ 머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399